

# 이한기 「간도」론의 비판적 분석\*

-올바른 간도영토론의 정립을 위해-

崔長根\*\*

(e-mail: nihonbu@daegu.ac.kr)

---

## 目次

---

1. 들어가면서
  2. '간도'론의 구성
  3. 수정되어야 할 내용
    - (1) 간도문제의 발단
    - (2) 을유담판과 정해담판
    - (3) 청관현의 횡포와 간도관리사 이범윤
    - (4) 간도과출소 설치와 간도협약의 체결
    - (5) 간도분쟁의 문제점과 백두산정계비
  4. 수용할 수 있는 내용
    - (1) 간도담판과 금반원의 원칙
    - (2) 간도협약의 무효성
    - (3) 간도분쟁과 Critical Date
    - (4) 간도분쟁의 해결절차
  5. 맺으면서
- 

## 1. 들어가면서

간도문제는 1885년과 1887년의 한청간의 감계담판에서 발단이 되었고,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개입하여 1909년 간도협약으로 청국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되었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영토는 재편되었

---

\* 2014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 지원금으로 연구되어짐.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영토학, 일본정치전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문제가 되었다. 간도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간도현지와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한 어윤중, 이증하, 이범윤 등이 간도연구의 1세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세대는 해방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간도영유권 회복을 위해 간도를 연구한 노계현, 이한기 등의 연구자는 2세대연구자이다. 오늘날 간도학회를 중심으로 간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가 3세대연구자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이한기는 1969년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한 『한국의 영토』 속에 「간도」론을 집필했다.<sup>2)</sup> 이것은 후학들에게 간도문제를 학문영역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학문을 계승함과 동시에 간도연구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간도문제는 선행연구에서 일본이 제3국으로서 한청간의 간도문제에 개입하여 중국영토로 인정해버렸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므로 통일한국에서 다시 영토문제를 제기하여 영유권을 회복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률적으로 이를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간도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답습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재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이한기의 「간도론」이 1969년에 집필된 후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영토에 대한 개념의 변화 등으로 국제법적 이념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간도문제에는 법적인 변화는 없을까?

이러한 것이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이한기의 「간도론」을 분석하여 그 연구에 대한 「수용」과 「폐기」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이한기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다.

## 2. ‘간도’론의 구성에 관해서

간도문제는 봉금지대시기, 백두산정계비시기, 1885년과 1887년의 2차에 걸친 감계담판시기, 러일 전쟁시기와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시기, 간도협약시기로 구분된다. 본 이한기의 연구도 같은 맥락으로 집필되었다.<sup>3)</sup>

1) 간도학회의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이일걸, 노영돈, 이돈수, 박선영, 조병현, 신각수, 최장근 등이 있다.

2)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309-351

3)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09-351.

제1절 정계비의 건립

- (1) 간도에 관한 예비적 고찰(①백두산, ②토문과 두만, ③청조이전의 북변사정)
- (2) 봉금지대의 설정과 정계비의 건립(①봉금지대의 설정, ②정계비의 건립)

제2절 한청 국경교섭

- (1) 간도문제의 발단
- (2) 감계담판 및 한청의 각축(①을유담판, ②정해담판, ③청관헌의 횡포와 간도관리사 이범윤)

제3절 간도파출소의 설치 및 간도협약의 체결

- (1) 간도파출소의 설치
- (2) 간도협약의 체결

제4절 간도분쟁의 대한 법률적 고찰

- (1) 간도분쟁의 성질
- (2) 간도분쟁의 문제점(①백두산정계비의 법적 성격, ②비문의 해석과 사실조사의 범위, ③간도담판과 금반언의 원칙, ④정계비의 효력과 과실책임, ⑤간도협약의 무효성, ⑥간도협약과 Critical Date)
- (3) 간도분쟁의 해결절차

본 이한기의 연구에서는 간도의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최근 제3세대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1962년 중조변개조약,<sup>4)</sup> 통일 후 간도문제,<sup>5)</sup> 역대정권의 간도정책실태,<sup>6)</sup> 지적학적 간도연구<sup>7)</sup>, 지도로 보는 간도연구,<sup>8)</sup> 일본의 간도영토정책<sup>9)</sup>, 기타<sup>10)</sup> 다양한 분야에서

---

4) 노영돈(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제82호, 백산자료원, pp.229-262.

5) 김명기(2009) 「국제법상 중국의 간도 불법 점거에 대한 대중국 항의의 필요성과 요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343-368. 노영돈(2005)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73-494. 노영돈(2009)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자료원, pp.217-246.

6) 이일걸(2011)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 간도정책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자료원, pp.243-176. 최장근(2009) 「이승만, 장면, 박정희정부의 간도정책 분석」,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269-296.

7) 조병현(2010) 「북방영토문제로 본 간도영역-지적학의 시각에서」, 『백산학보』 제86호, 백산자료원, pp.273-316. 조병현(2011) 「간도 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자료원, pp.185-212.

8) 이돈수연구

9)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최장근(2005) 「일본 대륙낭인의 간도문제 개입과정」,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37-472. 최장근(2008) 「한중 영토문제의 정치적 이해 -동북아 헤게모니와 간도 영토문제 해결의 취약성」, 『백산학보』 제80호, 백산자료원, pp.427-470. 최장근(2009) 「일제통감부의 간도 지건과 간도정책 본질의 고찰 -“조선간도경영안”(1906년 4월)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자료원, pp.247-284.

10) 이석우(2005) 「국제법상 식민지문제와 영토분쟁 : 屬國과 영토」,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399-436. 이석우(2006)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할 현대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제74호, 백산자료원, pp.295-340. 이석우(2009)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설정 필요성 : 독도와 간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297-342. 이성환(2004) 「간도의 지배체제 형성을 둘러싼 중, 일의 대립 1910년대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69호, 백산자료원, pp.303-332. 이성환(2005) 「을사조약과 간도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95-526. 정기은(2008)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역사 외교분쟁」, 『백산학보』 제82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없는 점이 이한기 <간도론>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수정되어야 할 내용

#### (1) 간도문제의 발단

간도문제의 발단에 관해, 「중성부사 이정래의 자조(諮照)<sup>11)</sup>는 서북경략사의 윤중의 명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이 한청간의 간도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 발단이며 어윤중은 일찍이 도일하였을 때 일본의 우대신 岩倉具實와 더불어 러시아 남침 대비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 1882년 4월에는 청국에 건너가 천진(天津)에서 이홍장을 만났다. 그때만 해도 간도지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던 이홍장은 한국 서북국경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남침에 대한 경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서북국경을 폐쇄하여 강한 이웃나라와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어윤중과의 회담이 있던 직후 “길림의 동쪽 토문강의 하류지역이 생산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금을 매장하고 있어 이미 다수의 산동지방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금을 채취하고 있으며, 토문 이동지역의 평야 또는 광활하고 비옥하며, 토양이 좋고 기름져서 농산지로서 천혜의 옥토인데다가 산악지대는 밀립 천리로 거림대목의 무궁한 이목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 간중 개간하는 것은 대부분이 한인들이니, 가능하면 최대한 이들 한인들을 쫓아내고 청국인(漢人)으로 하여금 채금, 벌목, 개간하도록 하지”라는 길림 순무 오대장의 계책을 받아들여 자신이 어윤중에게 권고한 국경 봉쇄책을 일변하게 된 것이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어윤중의 굳은 신념과 각오에 부딪혀 소위 간도 귀속문제가 야기하게 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sup>12)</sup>

간도문제는 동북경략사 어윤중에 의해 발단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국이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중국영토로서 권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비옥하고 금생산지에 해당되는 동북지역에 한인이 먼저 개간한 것에 질투하여 청국이 후발로 개간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서위압록’의 비문대로 실지를 답사한 결과로도 명확하

호, 백산자료원, pp.263-292. 김우준(2008) 「중국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 중국 내 이견활용과 한중 역사네트워크 형성-」, 『백산학보』 제80호, 백산자료원, pp.303-332. 김원수(2010)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제86호, 백산자료원, pp.249-272.

11) 백두산정계비에 의하면 토문과 도문은 동일한 강이 아니고 토문강은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토문강 이남은 조선의 영토임을 조선조정에 제출한 것.

12)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19-323.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이후의 간도문제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청국은 늘 상국으로서 하국인 조선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선의 권익을 무시하고 군림했던 것이다.<sup>13)</sup>

## (2) 을유담판과 정해담판

을유담판에 대해, 조선 조정은 침묵하지 않고 안변부사 이증화를 감계사에 임명하여 청국과 국경문제를 담판하게 하였다. 담판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여 우리 측이 우선 비를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국 파견원은 도문강의 변계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옳다 하고, 비문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증화는 무릇 비의 소재지로부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것과 두만강으로부터 역류하여 강원을 찾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이증화는 훈춘의 파병(청국군)이 그 집들을 불태우고 주민을 추방하여 살해함은 참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백두산 분수령 상에는 이미 강희제가 정한 비가 있는 까닭에 그렇게 무리하게 추방해서는 안 된다.

청국측이 서두수를 역류하여 강원을 찾을 것을 주장한데 대해서, 이증하는 그리되면 우리의 영토가 심하게 축소될 것이 확실하므로 두만이라 함은 한민 방언으로써 한국 내의 강 이름이다. 국경의 문제가 되는 것은 토문강인데 청국이 항상 토문강과 도문강을 혼동하고 있다. 토문강은 정계 비문 중의 ‘동위토문’이라하는 토문강을 지칭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건데 홍단수는 서변의 압록강 지류와 서로 75리 떨어져 있고, 비석이 세워진 곳과는 남북으로 130리 떨어져 있다. 서두수의 흐름은 길림지방에까지 이르러 비석이 서 있는 곳과는 남북으로 40리~50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문의 동위토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를 일일이 증거로 들어 청국 파견원의 의심을 타파하기에는 충분하였음을 밝힌다. 라고 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sup>14)</sup>

즉 청국은 두만강과 토문강을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조선측은 토문강과 도문강은 별개의 강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국측은 두만강과 상류의 서두수로 국경을 정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증하는 반대했다.<sup>15)</sup>

「정해담판」에 대해, 「1886년 당시 경성에 주재하여 내정의 간섭을 심하게 하던 원세강은 한국 조정이 토문과 두만을 동일한 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계 담판의 재개를 제의하였다. 중국은

13) 최장근(2008) 「한중 영토문제의 정치적 이해 -동북아 헤게모니와 간도 영토문제 해결의 취약성」, 『백산학보』 제80호, 백산자료원, pp.427-470.

14)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323-327.

15)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함부로 경계비를 홍단수에 미리 갖다 놓고 이를 국경선으로 삼을 것을 독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중하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역설하니 청국 파견원은 을유년의 조사는 강의 흐름에 의해서 강원을 찾는 것이었고, 강원을 먼저 선정한 후에 강의 흐름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목극등의 정계비는 조변의 비로서, 경계의 비가 아니었던 고로 홍단수로써 경계를 삼아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에 연접한 토추와 석추는 청국 왕조가 장백산에 시찰하러 다닐 때의 왕래의 표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계비의 본질적인 성격조차도 부인하려고 하였다. 이번에는 청국은 홍토수와 홍단수 사이의 석을수라는 작은 지류를 경계로 하자 하는 다소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담판을 매듭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화는 홍토수와 석을수와는 그 거리가 겨우 수리(數里)로서 무용의 땅이긴 하지만 국가의 영토는 촌척(寸尺)이라도 매우 중요하며 홍토수를 경계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담판은 결국 또다시 결렬되고 양국의 파견원은 5월 27일 회령으로부터 귀도에 올랐다. 한국 조정에서도 또 청국공사 원세강에 대해 정해의 담판은 국왕이 승낙(承諾)라지 않아서 다시 감정(勘定)해야 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써 감개담판은 일시 중단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sup>16)</sup>

즉 청국이 일방적으로 함경도의 상당부분을 중국영토로 하는 ‘홍단수’로 정하려고 하다가, 이중하는 두만강의 지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함경도지방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홍토수’를 끝까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홍토수’와 ‘홍단수’ 중간의 ‘석을수’로 하자고 고집을 피워 결국은 이중하가 초청 양국의 조정 간에 해결하기를 국왕에게 아뢰어 국왕이 회담의 결렬을 선언했던 것이다.<sup>17)</sup>

### (3) 청관현의 횡포와 간도관리사 이범윤

이한기는 간도에 대한 청국의 행정조치 및 통치 및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청국은 1880년 훈춘에 초간국을 설치하여 1903년에는 국자가에 무민 겸 이사부를 설치하여, 태립자에 분방경력청을 설치하여 이 지방 일대를 관할하고 지방 각 사를 나누어 사에 향약을 두고 한인을 향약에 임하게 하여 변발 청장을 하고 일반민에게도 이복치발을 강제하여 따라하지 않는 자는 그 경전을 몰수하고, 따로 군비와 경찰을 설치하여 길강군과 더불어 경무국으로 하여금 이에 충당케하여 병원 순경 등을 배치하여 간도의 치안을 유지했다.」<sup>18)</sup>라는 것이다.

1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327-329.

17)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18)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29.

이에 대해 조선조정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즉 「한정(韓廷)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인 실행행사가 아닌 만국통행지법례(萬國通行之法例)에 따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한정의 방침에 따라 1897년 가을에 함경북도 관찰사 조재우가 탐계, 감계의 형세를 탐찰하고 정성껏 도본을 만들고 덧붙여 담변 5개조를 작성했다. (중략)」<sup>19)</sup>라고 하는 것처럼, 국제법에 의거하여 간도의 한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간도영토주권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에게 지시하여 간도지적으로 조사하게 했던 것이다.

1898년 함경북도 거주민으로부터 한국의 관청의 설치를 상소하여 조정에서 관청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때에 한국 조정의 간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sup>20)</sup> 즉, 「이리하여 1899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이 파견한 관찰부 주사 김응용과 경원 군수 박일헌이 심사한 결과 “토문강의 상류로부터 하류의 바다에 들어오는 이동의 땅은 본래 조선 경계의 내지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변경의 틈을 염려하여 유민을 엄금하고 그 땅을 비워둔 동안 청국이 먼저 이 땅을 점유하고 마침내는 러시아에게 1천 여리의 땅을 할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한, 청, 러 3국이 회동하여 만국통행의 법례로서 공평하게 타결하는 길만이 우리나라의 변민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3국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큰 발전”이라고 하여 간도에 대한 광범한 영토적 주장을 하고 1900년의 북경조약에 의한 청국의 우수리강 동측 700리의 할양을 규탄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간도의 귀속문제에 관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사적을 6개조로 나누어 조정에 보고한 바를 보면, ①백두산 분수령의 토문강의 형편, ②두만강과 토문강이 2강이 다르다는 사실, ③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가 아니라는 사실, ④관북지(關北誌) 사적, ⑤고로(古老) 전설, ⑥북변(北邊) 사정 등이다.」<sup>21)</sup>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한기는 「④관북지(關北誌) 사적, ⑤고로(古老) 전설, ⑥북변(北邊) 사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당시 한국조정이 간도에 대한 영토적 근거를 무엇으로 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소재이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 후 한국조정은 1902년 간도거주민의 한치교 등으로부터 「한인의 호적을 만들고, 관원을 파견하여 거류민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내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에 임명하고 간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무하고 보호하게 하였다.」<sup>22)</sup> 이범윤은 1902-3년 사이에 청국의 횡포를 조

19)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0

20)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1.

21)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2.

22)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2-333.

정에 보고했고, 또한 스스로 사대포를 결성하여 청국의 횡포에 대항하여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청국은 조선조정에 대해 이범윤의 철수를 요구했고, 조선조정은 이범윤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관리사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중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는 간도에 머물다가, 전쟁 후에는 러시아로 피신했다. 또한 러일전쟁 중 1904년 한청 양국 간에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12개조를 이루고 있다. 즉 주요 내용은 「①양국 간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로 증거로 하고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하는데, 일단은 그때까지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무장병의 월경을 금한다. ②이범윤은 항상 사단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한국조정은 이를 금지시킨다. ③한청 양국이 모두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④古 間島 즉 광제육의 강변부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인의 경작권을 인정한다. 이상의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정이 거부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이 개입하여 일청간의 문제가 되었다.」<sup>23)</sup>라고 는 것이다.

여기서 청국은 일본이 개입하여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조선에 대해 간도문제를 은밀히 해결하려고 했다. 특히 이범윤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조정은 거부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개입하여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중재하여 간도문제를 해결할 것을 청국과 조선에 요청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이범윤의 철수를 요구하여 결국 조선조정은 이범윤을 철수하게 했던 것이다. 이범윤은 러시아로 피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하겠다.<sup>24)</sup>

#### (4) 간도파출소 설치와 간도협약의 체결

「간도파출소 설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일제 통감부는 용정촌에 2년간 파출소를 설치했고, 그 사이 일청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용정촌에서의 교변소 건축방해사건」이 있는데, 일본이 용정촌 시장 한가운데에 초소를 설치하려고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청국이 주권침해라고 하여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발단되었다.<sup>25)</sup>

먼저 청국의 주장<sup>26)</sup>은 다음과 같다. 즉, 「①일본은 교변소 건축의 권리가 없고, ②지방민의 보호는 청국스스로가 이를 담당해야 하며, ③통감부 파출소의 한민보호권은 절대로 이를 용인치 못하며, ④고로 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곧 청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병력으로써 이를 저지하겠다는 등의 내

23)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3-334.

24)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25)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6.

2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6.

용이다。」<sup>27)</sup>라는 것이다.

청국은 간도지방을 전적으로 청국영토시 했고, 간도 한인에 대해서도 청국의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일본의 간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주장<sup>28)</sup>은 다음과 같다. 즉 「①간도의 소속은 미정이며, 북경에서 양국 간에 그 귀속문제를 교섭중이다. ②일본은 이미 한민 보호를 위한 일본관헌의 상주를 통보한 바 있다. ③과출소가 한민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청국이 간섭할 수 없다. ④이미 순사를 배치했던 곳에 풍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교변소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⑤이 같은 작은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조금도 득책이 아니니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경에 있어서의 경계 담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맞서 양측 간에는 무력충돌의 기마져 감돌았으나, 먼저 일본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연기하여 위기를 면하고 1909년 7월에 헌병이 증원되고 나서 공사를 완성시켰다.」<sup>29)</sup> 「이때까지는 일본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서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긴 하였으나 표면적으로는 간도는 소속미정의 땅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로는 간도를 한국의 영토라 하고 한국은 청국 관아(官衙)에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sup>30)</sup>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됨에 일본은 청국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의 과소를 절감하고 새로이 1개 대대병력을 당시 통감에게 요청하여 그 내락(은밀한 승낙)을 받고 실현단계에서 돌연 안봉선 개축문제와 관련하여 간도문제 뿐만 아닌 간도의 제 현안을 공동처리하게 된 것이다.」<sup>31)</sup>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통감부와 일본외무성이 통감부 과출소를 설치한 목적은 간도지역이 소속 미정의 땅이라는 것을 청국정부에 강하게 어필하여 담판에 의해 최소한의 영토라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것과 한국영토에 살고 있는 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던 것이다.<sup>32)</sup>

당초에는 일본외무성도 통감부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 일본 즉 통감부와 외무성이 의도했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청국이 강력하게 나와 전혀 양보의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간도정책에 있어서 이토 통감과 외무대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통감 이토는 간도를 침략적으로 청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양보를 받아내어 영토를

27)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34-339.

28)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6.

29)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6.

30)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36-337.

31)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37.

32) 최장근(2009) 「일제통감부의 간도 지건과 간도정책 본질의 고찰 -“조선간도경영안”(1906년 4월)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자료원, pp.247-284.

확보하려고 했다. 방법적으로는 절대로 양국 간에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로 상태에서 외교담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해서 청국이 양보할 기세가 전혀 없게 되자, 이토의 정책이 일본외무성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은 한국통감에서도 사임을 하게 되었다. 이토 사임이후 간도영토를 확보한다는 정책은 포기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토 사임이후 간도영토화에서 양보하여 만주의 권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만족하려고 했다. 그 결과 안봉선 개축을 비롯한 6개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33)</sup>

여기서 일본정부의 대륙 영토정책의 그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즉, ①일단 간도가 ‘한국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련성을 지운다. ②간도가 ‘미정의 땅’이라고 하여 분쟁지역임을 주장한다. ③청국이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파출소를 설치하고, 초소를 설치하여 상대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행한다. ④일본은 도발을 통해 분쟁지역임을 확인한 후 협상으로 이권을 챙기는 것이다.<sup>34)</sup>

요컨대 일본정부의 간도 침략 의도는 반드시 한국영토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간도지역의 일부 즉 「동간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국을 상대로 간도를 전적으로 한국영토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만주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토 통감은 달랐다.<sup>35)</sup>

그리고 간도협약에 대해, 「러일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와 남북만주 및 내외몽고에 대해 특수이익을 균점할 것을 비밀리에 약정한 일본은 만주침략의 일단 계로서 소위 ‘동삼성6안’을 청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1909년 1월6일부터 북경청국외부상서 梁敦彥과 주청일본공사 伊集院彦吉 간에 교섭을 개시하였다. 동삼성이란 것은 (중략: 동삼성6안 내용)등으로서 먼저 청국대표가 무순탄광 문제를 간도귀속과 교환조건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일본은 간도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여타 5개 사항에 대한 청국의 일괄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이어서 재간도 한인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국은 영토권을 인정하면서 재판권을 유보함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세 차례에 걸쳐 담판 끝에 드디어 1909년 9월 4일에 양돈언(梁敦彥)과 伊集院 간에 소위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 체결되었다.」<sup>36)</sup>라고 썼다.

사실 ‘간도협약’은 일본정부는 간도를 주장하면 만주를 잃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간도를 포기하고 이를 재물로 삼아 만주정책을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 일본정부는 간도협약을 앞당길 목적으로 일본이 필요로

33)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34)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35)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3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37-338.

계획하고 있었던 강압적으로 안봉선 개축을 선언했다. 또한 한인의 재판권을 요구했다. 한인의 재판권을 요구한 의도도 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지방에 있어서 청국의 행정권을 간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국 입방에서는 더 이상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협상에서 일본은 한인의 재판권을 포기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만주 영토침략정책에 필요한 6현안을 강하게 요구했고, 청국은 무순탄광의 개굴권과 교환조건을 요구했다. 결국은 일본은 간도영토를 빌미로 한인의 보호권 포기와 조선의 간도영토를 재물로 삼아 일본의 만주침략의 의도만을 전적으로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7)</sup>

이한기의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은 마치 중국이 먼저 무순탄광의 채굴권과 간도영토의 영유권 포기를 종용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혼돈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법이다.

#### (5) 간도분쟁의 문제점과 백두산정계비

「간도분쟁의 문제점」에 대해, 「간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는 1909년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취급되어 왔으나 한국과 중국 간에는 1887년에 동 지역에 관한 담판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이래 분쟁해결의 기회를 갖지 못한 미결의 영토분쟁사건으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1885년의 을유 담판에서부터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간도지방에 대한 영토적 주권이 한국 또는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 양국 간의 주장의 충돌이다. 양국의 주장은 동 지역에 관한 국경선을 획정한 1712년 ‘백두산정계비’ (토문강의 수원인 북위 42도6분, 동경 128도 9분,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였으나, 청일 간에 간도협약을 맺은 후 분쟁의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전해진다)의 존재, 정계비의 성질, 비문의 해석에 대해 본질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분쟁의 초점은 국경선 획정의 표준이 되는 비문구절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 따라서 동 분쟁은 비문해석(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적 분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sup>38)</sup>라고 쓰고 있다.

간도문제는 봉금지대에 대한 한중간의 영토주권문제,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해석문제, 1885년과 1887년의 강제담판의 경과에서 발생하는 영유권문제, 1909년의 간도협약 등으로 구분된다. 이한기는 1909년 간도협약이 제3자인 청일 간에 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과 청국 간에 있었던 1885년의 담판을 토대로 진행되었던 「1887년의 담판」에서 다시 영토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1887년의 담판」은 1885년의 담판에서 청국이 강압적으로 토문강과 두

37)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38)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40.

만강이 동일한 강임을 인정하도록 한 담판이었다. 이를 인정한다는 결론이 된다. 즉 「1887년의 담판」의 주요 핵심은 두만강의 상류 4개의 지류 중에 어느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이었다.<sup>39)</sup>

또한 「백두산정계비」에 대해, 백두산정계비는 청국의 강희제의 명령에 따라 제1차로 1677년 내대신 武木 言内の 송화강 상원지 답사, 1711년 오리총관 목극등의 국경심사를 거쳐 1712년 조선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서박 등과 백두산을 실측한 후 강원을 찾고 압록, 토문 2강의 수원을 찾아 분수령 상에 정계비를 건립한 것이다. 동 비문은 양국의 국경을 백두산의 분수령을 기점으로 서는 압록강. 동은 토문강으로 할 것은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그 후 1867년 청이 당시까지 봉금지대였던 간도지방을 개방한 후 양국 간의 충돌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여 1885년의 을유 담판이 개시되기까지는 동 정계비상의 합의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해왔다. 이상에서 보건대 1712년 ‘백두산정계비문’은 조약체결의 능력이 있는 당사자인 한청에 조약체결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에 의하여 분쟁지역의 지리조사까지 완료한 후에 가차 없이 합의한 내용을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시킨 완전한 의미의 국제조약이며 그 효력을 수세기에 걸쳐 유효하게 유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sup>40)</sup>라고 쓰고 있다.

이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한일 간의 간도문제를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두산정계비 이전에 한인들이 이용했던 공광지대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무시되고, 청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된 경위와 백두산정계비의 법적인 효력 및 국경조약으로서 효력이 있느냐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②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된 것은 청국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백두산정계비는 「대청」비이다. 조선 측에서 이 백두산정계비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한국 측의 입장을 무시한 정계비 설정이다. ③백두산정계비를 조약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대청」비이다. 조선 측에서 이 백두산정계비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한국 측의 입장을 무시한 정계비 설정이다. 백두산정계비를 양국이 합의한 조약처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결국 1887년의 담판을 중심으로 하면 청국이 강압적으로 요구해온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두만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두만강 상류의 문제임을 인정한다는 결론이 된다.<sup>41)</sup>

39)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40)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42-343.

41)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 4. 수용할 수 있는 내용

### (1) 간도담판과 금반원의 원칙

간도담판과 금반원의 원칙에 대해 「간도분쟁의 담판과정에 있어서도 청의 주장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니 초기에는 ‘백두산정계비’의 존재를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그 위치 및 분수령으로부터 강의 흐름을 확인하려는 태도였다. 그러다가 중도에는 동문, 도문 2강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고, 정해담판에서는 정계비의 성격조차도 부인하면서 과거의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국경조약의 체결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계비의 확인과 비문상의 국경선인 토문강의 확인을 통하여 간도의 귀속을 결정하려는 초기의 주장을 형세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려는 청의 입장은 반금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장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수락될 수 없는 것이다.»<sup>42)</sup>라고 쓰고 있다.

한청 간에는 1885년과 1887년 2번에 걸쳐 청한 양국의 대표가 국경담판을 했다. 1885년의 담판은 정계비문의 토문강과 압록강을 확인하고 양국의 국경선을 결정하려고 했다. 조사결과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서 사할린을 거쳐 태평양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다시 말하면 백두산정계비도 청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지만, 그것도 양보하여 청한 양국의 대표에 의해 합의하여 건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전 조약에서 양국의 국경을 「토문」강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87년의 담판에서 청국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토문강과 두만강을 동일한 강으로 취급하여 두만강의 상류 4개를 두고 담판을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부득이 청국의 강요에 의해 담판에는 임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문제에 있어서도 조선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 측은 협상을 결렬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한기의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주장은 매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산정계비가 청국의 강압에 의해 설치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논증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려는 것도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 (2) 간도협약의 무효성

간도협약의 무효성에 관해, 「간도협약은 형식상으로는 당시 한국의 외교권

42)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345-346.

을 행사한 일본이 청국과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조약은 계약 당사국 간에만 법률을 창조한다. 조약이 제3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조약상의 법률적 이익을 부과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를 야기하지만……제3국을 구속하는 의무를 창설할 때에는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주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간도협약에 있어서의 첫째의 문제점은 과연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 대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토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체결을 위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냐하는 점이다. 1909년은 1910년의 합병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다. 한국은 대외관계의 일부 권한만을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으며, 형식적으로도 주권은 계속 유지된 상태였다. 따라서 일청간의 동 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서 외교권의 발탈을 전제로 할지라도 일본에게 한국의 영토 변경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한일 조약도 찾아 볼 수 없는 한, 동 협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의 무효성은 자명하게 된다. 일반 국제법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sup>43)</sup>라고 쓰고 있다.

일본적으로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할 때에는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가지고 청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기에 무효라고 해왔다. 그렇다면 한일 병합조약 이전에라도 한국이 합법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건넸다면, 한국영토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한기의 설명은 좀 다르다. 외교권의 무효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의 영토를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약도 없기 때문에 제3국인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간도협약처럼, 변경을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있을 듯하다. 외교권을 강탈당했다는 것에 국한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강탈인가? 라고 그 한계가 애매할 수도 있다. 물론 한일협약은 황제와 총리대신이 동의하지 않고 외무대신의 직인을 몰래 훔쳐 와서 찍었기 때문에 강제조약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3) 간도분쟁과 Critical Date

간도분쟁과 Critical Date에 관해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Critical Date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동 일자 이후의 당사자의

43)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347-348.

행위는 하등의 법률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영유권 귀속의 결정도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법률적 지위에 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Critical Date의 선정은 앞으로 한청(청국의 계승자)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문제이기는 하나, 최소한 일본이 개입한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09년 의 간도협약을 위시하여 중국이 점유하고 있던 사실 및 제2차세계 대전후의 여하한 영유권에 관한 행위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sup>44)</sup>라고 쓰고 있다.

이한기의 주장에는 수용할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다. 즉, 이한기는 한청간의 간도문제의 Critical Date는 일본이 개입하기 이전의 한청간의 국경담판을 두고 말한다. 1887년의 감계담판이다. 1887년 이후의 실효적으로 변경한 조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측 입장에서 보면, Critical Date는 국제법적으로 더욱 고마운 법이 아닐 수 없다.<sup>45)</sup> 그런데 간도협약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일본과 청국 간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체결하여 일본은 만주의 이권을 누리고, 청국은 간도영토를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의해 100년 이상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법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사회의 원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

#### (4) 간도분쟁의 해결절차

간도분쟁의 해결절차에 관해 「한중간의 국경문제에 관한 중공과 북괴 간의 합의가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또한 앞으로 어떠한 영토변경이 합의된다 할지라도 구 대한제국의 법률상의 승계자인 대한민국과 청의 정당한 계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sup>46)</sup>

이한기는 한국이 한국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간에 영토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1990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간도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다투고 있는 중국입장에서 본다면 북한도 엄연히 대한제국을 승계한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한기의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는다.

44)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349.

45) 독도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4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49-351.

## 5. 맺으면서

이상으로 이한기의 「간도」론을 비판적으로 분석 고찰했다. 이한기가 간도론을 저술하고 45년이 경과한 지금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의 진척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간도문제 자체가 그다지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또 간도문제가 영토문제로서 발생하여 오랫동안 쌍방 간에 공방이 있어서 정치적 문제로서 2국간 혹은 다지 간의 영토문제로 크게 대두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간도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간도연구가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새로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45년이라는 세월 속에 국제사회의 영토인식의 변화에 따라 간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부족한 논증이지만 그러한 점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간도문제의 해결방안이라든가, 국제법의 인식의 변화 등이 새롭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려고 한다. 본연구의 성과로서, 먼저 이한기 간도론의 구성상 특성을 보면, 제3세대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한 1962년 중조변개조약, 통일 후 간도문제, 역대정권의 간도정책실태, 지적학적 간도연구, 지도로 보는 간도연구, 일본의 간도영토정책,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한기 <간도론>에는 없다.

또한 수정되어야할 내용과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는 이한기의 <간도론>은 '정계비의 건립, 한청 국경교섭, 간도과출소의 설치 및 간도협약의 체결, 간도 분쟁의 대한 법률적 고찰'이라는 구성으로 간도연구의 방법론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후세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50년, 100년 등의 시효에 관한 언급이 없고, 간도과출소의 설치 경위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한기의 간도론에는 선행연구에 관한 각주가 없어서 시노다의 연구<sup>47)</sup> 내용상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 독창적인 연구인가가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기(2009) 「국제법상 중국의 간도 불법 점거에 대한 대중국 항의의 필요성과 요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343-368.  
 김우준(2008) 「중국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 중국 내 이권활용과 한중 역사네트워크 형성」, 『백산학보』 제80호, 백산자료원, pp.303-332.

47)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1938, pp. 1-343.

- 김원수(2010)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제86호, 백산자료원, pp.249-272.
- 노영돈(2005)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73-494.
- \_\_\_\_\_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제82호, 백산자료원, pp.229-262.
- \_\_\_\_\_ (2009)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자료원, pp.217-246.
- 이일걸(2009) 「간도협약체결 100년의 회고와 전망」,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203-268.
- \_\_\_\_\_ (2011)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 간도정책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자료원, pp.243-176.
- 이석우(2005) 「국제법상 식민지문제와 영토분쟁 : 屬國과 영토」,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399-436.
- \_\_\_\_\_ (2006)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할 현대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제74호, 백산자료원, pp.295-340.
- \_\_\_\_\_ (2009)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설정 필요성 : 독도와 간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297-342.
- 이성환(2004) 「간도의 지배체제 형성을 둘러싼 중, 일의 대립 1910년대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69호, 백산자료원, pp.303-332.
- \_\_\_\_\_ (2005) 「을사조약과 간도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95-526.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pp.347-348.
- 정기은(2008)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역사 외교분쟁」, 『백산학보』 제82호, 백산자료원, pp.263-292.
- 조병헌(2010) 「북방영토문제로 본 간도영역-지적학의 시각에서」, 『백산학보』 제86호, 백산자료원, pp.273-316.
- \_\_\_\_\_ (2011) 「간도 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자료원, pp.185-212.
- 최장근(1998) 『한중국경문제연구』 백산자료원, pp. 1-407.
- \_\_\_\_\_ (2005) 「일본 대륙낭인의 간도문제 개입과정」, 『백산학보』 제71호, 백산자료원, pp.437-472.
- \_\_\_\_\_ (2008) 「한중 영토문제의 정치적 이해 -동북아 헤게모니와 간도 영토문제 해결의 취약성」, 『백산학보』 제80호, 백산자료원, pp.427-470.
- \_\_\_\_\_ (2009) 「일제통감부의 간도 지건과 간도정책 본질의 고찰 -“조선간도경영안”(1906년 4월)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자료원, pp.247-284.
- \_\_\_\_\_ (2009) 「이승만, 장면, 박정희정부의 간도정책 분석」, 『백산학보』 제85호, 백산자료원, pp.269-296.
-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1938, pp. 1-343.

## 要 旨

The critical poi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Hangi-Lee said that have to succession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procedures for solving problem after reunification.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with Korea in 1990, but the resolution process may change because this paper wrote before.

Hangi-Lee said that the Kando problem must go back before Japan's intervention on Critical Date. However, It was more than 100 years since 1909 Kando Convention tolerated by the Chinese occupation. what will you do?

Hangi-Lee said that the legality of Kando Convention is invalid because Japan got the Kando of Korea territory to China without any separate treaty. In general, it is difference that Japan have no Diplomatic bargaining for Korea's territorial disposition.

Hangi-Lee said violates the law of estoppel because China claimed the new boundaries with the boundary of Yalu River - the Tumen(頭滿) River but China claimed with the boundary of Yalu River - the Tomun(土門) River at Beaktusan Jeonggyebi. It must be accepted that reasonable logic. However, there are many parts can not be accommodat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and such as the lack of research level,

キーワード : 간도협약(Kando Treaty), 이한기(Lee Han Gi),  
간도론(Kando Theory), 백두산정계비(Baedusan Jeonggyebi),  
감계담판(Gamgye Negotiation)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